

성균나노과학기술원 규정

제 1 편 총 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나노과학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기술원은 나노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, 공정, 소자 및 측정 분야들에 대한 창의적 연구와 선진교육을 주도함으로써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안에 둔다.

제4조(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) ①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기술원의 교원인사(임용 등) 및 교육부문 학사 운영(교육과정·학생지도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“대학”은 “기술원”으로, “학과”는 “나노과학기술학과”로, “대학운영위원회”는 “기술원운영위원회”로 각각 본다.

② 기술원 소속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제5조(사업) 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나노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
2. 나노과학기술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
3.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
4. 산·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
5. 연구성과 사업화
6. 국내외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7. 나노과학기술 분야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로드맵 작성
8.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
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6조(기구)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기술원장
2. 위원회
 - 가. 자문위원회
 - 나. 운영위원회
 - 다. 편집위원회
3. 연구부
 - 가. 나노소재 연구부
 - 나. 나노공정 연구부
 - 다. 나노소자 연구부
 - 라. 나노측정 연구부
4. 삭제
5.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
6. 양자정보센터
7. 삭제

8. 나노기술사업화센터
9. 차세대융합에너지저장기술센터
10.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
11.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
12. 지원조직

가. 행정실

나. 공동기기관리실

제7조(기술원장) ① 기술원장은 국내·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기술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기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
④ 기술원에는 기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, 부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은 기술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을 준용한다.

제 3 장 자문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기술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기술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된다.

③ 본교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장, 기술원 부원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·외 저명 학·연·산 전문가 가운데서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(기능)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술원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술원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술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기술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의 심의는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,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회의)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구성) ① 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기술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된다.

③ 부원장, 기술원 산하 연구부장, 편집위원장,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2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기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

5.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술원 연구위원의 임용,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7.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
8. 예·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
9. 산하 부서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10. 기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
11. 공동기기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편집위원회

제14조(구성) ① 기술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장은 기술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국내·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5조(회의)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6 장 교원·연구원

제16조(기술원 전임교원) ① 기술원에는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술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
② 기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7조(겸직교수) ① 기술원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겸직교수란 기술원으로 겸직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력으로 정의한다.

③ 기술원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석좌교수 등) ① 기술원에는 석좌교수, 연구교수, 특임교수, 교환교수 등을 둘 수 있다.

② 기술원 석좌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9조(연구위원) ① 기술원의 연구위원은 기술원 전임교원, 겸직교수, 석좌교수, 객원교수, 교환교수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.

② 연구위원은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기술원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국내·외의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20조(연구원) ① 기술원 및 기술원 부설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- 2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- 3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기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제 2 편 연 구 기 관

제 1 장 삭 제

제 1 절 삭 제

- 제21조 삭제
- 제22조 삭제
- 제23조 삭제

제 2 절 삭 제

- 제24조 삭제
- 제25조 삭제

제 3 절 삭 제

- 제26조 삭제
- 제27조 삭제
- 제28조 삭제

제 4 절 삭 제

- 제29조 삭제
- 제30조 삭제

제 2 장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

제 1 절 총 칙

- 제31조(명칭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하며, 이 장에서 같다)라 한다.
- 제32조(목적) 센터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분야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

을 통해 세계수준의 지식 및 경쟁력을 창출하고 융합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3조(운영기간) 센터 운영기간은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학제간융합분야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기간 및 후속 관리기간으로 한다.

제 2 절 조 직

제34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
4. 소위원회
 - 가. 자문위원회
 - 나. 평가위원회
 - 다. 산학협력위원회
 - 라. 교육위원회
 - 마. 연구위원회
 - 바. 국제협력위원회

제3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36조(설치 및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3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
5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6.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7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3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절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

- 제39조(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학사운영을 위한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은 연구위원 및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양자정보센터

제 1 절 총 칙

제40조(명칭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양자정보센터라 한다.

제41조(목적) 센터는 양자컴퓨팅 기술 관련 국내외 전문연구인력과 기초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, 양자컴퓨팅 관련 교내외 워크숍 및 국제학회를 추진함으로써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절 조 직

제42조(기구)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연구과제심의위원회

제4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44조(설치 및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5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
5. 연구소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절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등

- 제47조(연구과제심의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구과제심 의위원회를 둔다.
- 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,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삭제

- 제48조** 삭제
- 제49조** 삭제
- 제50조** 삭제
- 제51조** 삭제
- 제52조** 삭제
- 제53조** 삭제
- 제54조** 삭제

제 5 장 나노기술사업화센터

제 1 절 총 칙

- 제55조(명칭)** 본 센터는 나노기술사업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- 제56조(목적)** 센터는 기술원 및 본교의 나노기반 융복합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, 미래 신산업을 창출 선도 연구자 및 기술창업자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57조(사업)** 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수요조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쏠주기 기술사업화 총괄
 2. 기술사업화 지향 미래 핵심기술 로드맵 제시 및 마케팅
 3. 시작품 등 연구개발 중간성과물 판매대행 및 연구자 창업지원
 4. 글로벌 산학협력 기업과 기술교류회 운영 주관
 5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절 조 직

- 제58조(기구)**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1. 센터장
 2. 부센터장
 3. 운영위원회
- 제59조(센터장 및 부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두며,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장 및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60조(설치 및 구성)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위원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61조(심의사항)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사항을 해당 운영위원회 종료 후 최초 도래하는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2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장 차세대융합에너지저장기술센터

제 1 절 총 칙

제63조(명칭과 편제) 본 센터는 차세대융합에너지저장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명칭하며,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안에 둔다.

제64조(목적) 센터는 성균나노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,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5조(사업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공학, 응용과학,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
2.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
3. 저명인사 초청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·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간행물 발간
4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 등 연구 용역
5.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, 연구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절 조 직

제66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
제67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8조(연구원) ①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(員)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2. 상임연구원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가. 수석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나. 책임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다. 선임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라. 연구원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3. 객원연구원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4. 연구원보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⑤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리서치 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69조(설치 및 구성) ①센터에는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71조(회의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절 재 정

제72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, 장비사용료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73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5 절 사업보고 및 감사

제74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5조(감사) 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절 해 산

제76조(해산) 센터의 해산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5조 제2항 및 제 18조에 따른다.

제 7 장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

제 1 절 총 칙

제77조(명칭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라 한다.

제78조(목적) 센터는 양자정보과학 연구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79조(사업) 센터는 제7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진연구인력 양성 및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
2. 미래인재 유입 촉진 및 양자정보과학 저변 확대
3. 양자소자 제작 평가를 위한 양자팹 운영 사업
4. 양자클라우드 국내 공동활용체계 구축·운영 사업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절 조 직

제80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
제81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82조(연구원) ①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(員)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2. 상임연구원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가. 수석연구원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나. 책임연구원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다. 선임연구원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라. 연구원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
3. 객원연구원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
4. 연구원보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⑤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리서

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절 운영위원회

- 제83조(설치 및 구성)** ①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.
③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제84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센터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 2.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 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4.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
 5. 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
 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- 제85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절 재 정

- 제86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교내·외 연구비, 연구용역수입금, 장비사용료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87조(회계연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5 절 해 산

- 제88조(해산)** 센터의 해산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제 3 편 교 육 부 문

제 1 장 교 육 과 정

- 제89조(교육과정)** 기술원은 다음 나노과학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1.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
 2. 산학교육 및 특화사업
 3. 공개강좌

- 제90조(교육과정의 운영)** ① 교육과정 운영은 기술원 부원장이 통할한다.
②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학사관리위원회

- 제91조(학사관리위원회)** ①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
- ② 학사관리위원회 위원은 기술원 전임교원과 본교 겸직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나노과학기술학과장이 된다.
- ③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에 따른다.

제 5 편 지 원 기 구

제 1 장 행 정 실

제92조(행정실) ① 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

1. 기술원의 행정업무 전반
2. 기술원의 연구 및 교육부문 행정지원
3. 기술원의 교내·외 홍보업무
4. 기술원의 정기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지원
5. 기술원 부설연구소의 행정업무 지원
6.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

제93조(행정직원)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두며,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행정직원은 기술원장을 보좌하여 기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2 장 공동기기관리실

제94조(공동기기관리실) 기술원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원 안에 공동기기관리실을 둔다.

제95조(업무) 공동기기관리실은 제2조 및 제2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동기기의 사용·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
2. 기술원내 연구·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
3. 연구·실험실습용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
4. 공동기기 관리·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
5.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
6. 공동기기 사용료의 징수 및 기자재의 유지·보수
7.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업무
8. 기타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96조(직원) 공동기기관리실에는 제반 기기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6 편 기 타 사 항

제 1 장 재 정

제97조(재정) ① 기술원의 재정은 교비, 외부기관의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기술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8조(회계연도)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2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제99조(사업계획) 기술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0조(사업실적) 기술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1조(감사) 기술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3 장 보 칙

제102조(세부사항) ①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원장이 정한다.

② 기술원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부원장이 기술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